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

손진우 소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업재해 감축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지금, 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 거듭 강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서류상 형식주의에 매몰되거나, 조직도 상 인력 배치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 현실이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

오해 1. 외형과 실질의 혼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오류는 조직과 체계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한 뒤 “우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라고 자부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인적·물적 구성인 외형, 즉 조직을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이러한 외형적 구성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았던 시절이 있었다. 안전보건이 생산의 부수적 과정으로만 여겨졌기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남다르게 인식됐다. 그러나 지금 강조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조직도의 칸을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체계는 일터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그 결과를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살아있는 순환 과정’을 뜻한다. 즉, 조직이 사람의 ‘몸’이라면 체계는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과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조직도상 배치 여부가 아니라, 안전보건 활동이 노동 과정의 일상에 스며들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은 시작일 뿐, 그것이 끊임없이 순환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강조하는 바는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오해 2. 위험성평가 실시가 곧 체계 구축이라는 착각

두 번째 오해는 위험성평가라는 도구를 체계라는 목표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실효적 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강조함에 따라, 현장의 실시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위험성평가를 수행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는 전부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가동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동력이다. 가령, 엔진이 자동차의 전부는 아니지만 엔진 없이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위험성평가 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멈춰 선 고철더미에 불과하다. 반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라는 하드웨어가 작동하지 않는 위험성평가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캐비닛 속에 잠든 공허한 기록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보다, 그 결과를 어떻게 조직 전체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확산시키고 작동시키느냐가 본질적인 과제이다.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구동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어디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이 바로 위험성평가다. 이는 단순히 위험한 기계를 찾아내는 수준을 넘어, 모든 작업 공정, 설비, 유해 물질, 작업 방식과 노동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사고나 질병의 가능성을 찾아내 분류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러한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잇는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가이드북이 위험성 평가를 핵심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도출한 결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이 되어 개선의 우선순위에 대해 노사가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개정하는 객관적 근거가 되며, 현장 노동자 교육의 실질적인 교안이 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위험성평가가 결여된 안전보건체계는 ‘속 빈 강정’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위험성평가는 문서 기록일 뿐이다.

노동자 참여가 관건적인 까닭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가 형식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참여가 핵심이다. 노동자는 일터의 유해·위

험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고 목격하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다. 아무리 정교한 공학적 기법과 전문가의 분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사람의 경험과 직관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자칫 관리자나 탁상행정에서 놓치기 쉬운 아차사고의 경험이나, 표준작업 지침서나 매뉴얼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정형 작업 시 돌발 위험 등은 오직 현장 노동자의 경험이 녹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만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에 대한 개선을 제안하고, 그 제안이 실제 설비 개선이나 절차 변경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안전은 위로부터의 통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로 인식될 수 있다. 노동자 참여를 통해 획득되는 이러한 효능감은 조직에 대한 상호 간 신뢰와 안전문화 정착의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단단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첫째,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지원이다.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실질적 개

선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경영진의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고, 예산과 자원을 우선 배정하는 리더십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동의 전제 조건이다.

둘째, 노동자 참여의 제도화와 공식화이다.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업무 시간으로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아차사고를 보고하고, 온·오프라인 안전 제안 창구 상설화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위험을 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일하는 사람의 제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위험성평가 전 과정이 안전교육을 통해 공유되어 안전보건 권리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외부강사를 통해 법정의무 교육 시간을 채우거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우리 일터와 무관한 사고사례를 나열하고, ‘스스로 조심해서 일하자’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교육에 대한 비판이 많다. 위험성평가의 기획과 실행 계획이 공유되고, 나의 업무가 위험성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결과와 개선 계획이 공유될 때 현장에서의 교육 참여 열기는 배가될 수 있다.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제안이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집단적인 교육을 통해 재확인될 때, 노동자 참여가 더욱 독려될 수 있다. 위험성평가를 안전교육의 핵심주제로



▲ 노사 합동으로 현장 위험요인(산소절단기 호스)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 HD현대중공업

삼아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안전의 주체’로 인식하게 만드는 ‘안전보건 권리 감수성’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환류(Feedback) 시스템의 정착이다. 위험성평가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이다. 마련된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위험을 낮추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다시 평가에 반영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닌, ‘개선을 위한 기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계의 투명성과 노사 간 신뢰는 확보된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노동자 참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할 때, 위험성평가는 비로소 생동감을 얻는다.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구태의연한 문화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체계 내실화의 지름길이다.

연결망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성평가를 씨줄과 날줄로 엮는 것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안전보건 의제를 동등한 위치에서 심의·의결하는 유일한 공식 기구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분기별 요식 행위를 넘어 위험성평가 결과를 심층 검토하고 구체적인 예산 집행을 의결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할 때, 안전보건관리체

마치며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순환 과정이다. 경영진의 의지, 노동자의 참여, 교육과 환류 시스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 안전은 통제가 아닌 권리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재해 감축의 가장 확실한 길이다. **알터**